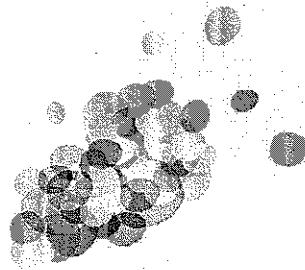


관 리 번호	
--------------	--

제 3 회 (서면) 이 사 회

2009. 9. 11(금)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제 3 회 이사회 안건

I. 의결안건

제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개정(안)

제2호 기본재산(논현동 게임아카데미빌딩) 매각
(안) 1부.

제3호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개정(안) 1부.

제4호 인사규정 개정(안) 1부.

I. 의결안건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안 건
보 고 일 자	2009. 9. 11. (제 3 회)	

안건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개정(안)

제 안 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이재웅
제 안 일	2009. 9. 11.

제 1 호 의안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개정(안)

1. 의결 주문

○ 우리 원 정관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3항에 의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3개 기관 통합에 따라 목동 방송회관 건물의 일부분을 교육연수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 확보 및 노동부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자격 확보를 위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받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 지정 신청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사항을 명시되어 있어야 함. 현재 우리 원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정관 변경 내용

- 제4조(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통한 교육연수사업"항목추가

4. 조치 사항

○ 이사회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요청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5. 관련근거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3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안 건
보 고 일 자	2009. 9. 11. (제 3 회)	

안건명 : 기본재산(논현동 게임아카데미빌딩)
매각(안)

제 안 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이 재 응
제 안 일	2009. 9. 11.

제 2 호 의안 : 기본재산 (논현동 게임아카데미빌딩) 매각(안)

1. 의결 주문

○ 우리 원 정관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항에 의거 " 기본재산인 논현동 게임아카데미빌딩 매각 "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3개 기관 통합과 관련, 기존 게임아카데미교육 과정이 방송회관으로 이전 통합 . 운영 됨에 따라, 유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현재 공실)

○ 건물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여, 院 경영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함.

※ 院 차입금 총액 103억원(이자부담액 ≒ 월 5천만원/연 6억원)

※ 본 건과 관련하여, 前 KOGIA에서 차입금상환 계획의 일부로 건물 매각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 승인받은 바 있음.

3. 주요 내용

○ 부동산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주 소	강남구 논현동 56-14		건물규모	지상 6층, 지하 2층
대지면적	637.8㎡(192.93평)		연 면 적	2,508.52㎡(758.83평)
준공일자	2001. 08. 16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가 격	감정가격	83.2억원	취득가격	47.0억원(2001.08.16)
	감정일자	2009. 07. 29	잔존가격	42.1억원(2008.12.31)

※ 근거당 설정 :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70억2천만원 (차입금 54억원)

○ 매각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매각 추진

4. 조치 사항

- 이사회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요청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5. 관련근거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4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각·양도·변경·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에 의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별지 1>

한국콘텐츠진흥원 기본재산 목록

기본재산		면적(㎡)	구분	평가액(원)	비고
문화콘텐츠센터 (상암동 DMC 1602)	총14층	43,609.71	건물	39,097,923,290	감가상각누계액 (2,240,228,720)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상암동 DMC 1602)	총12층	16,748.29	건물	28,173,698,710	감가상각누계액 (2,426,068,500)
KOCCA 빌딩 (강남구 논현로 448)	총7층	2,419.85	토지	7,208,828,927	
			건물	1,291,171,073	감가상각누계액 (261,820,801)
			소 계	8,500,000,000	*담보설정(4,680백만원)
게임아카데미 빌딩 (강남구 논현동 산골길 4)	총6층	2,503.11	토지	2,080,000,000	
			건물	2,29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92,584,925)
			소 계	4,370,000,000	*담보설정(7,020백만원)
경기도 소재 임야 (고양시 풍동 산32-3외)	2필지	16,528.00	토지	3,400,000,000	
중국 사무소 (북경 형지빌딩)	7층	380.16	건물	1,153,623,241	계약기간 (2001.7.11~2048.10.13 /약47년)
			관리보증금	17,044,826	
			소계	1,170,668,067	
일본 사무소 (미나토구 아카사카 트윈타워)	13층	172.23	임대보증금	70,555,808	계약기간 (2005.2.14~2008.2.2 8 / 3년)
			예금	154,838,408	
			소계	225,394,216	
방송진흥기금 (지역민방 출연금)			예금	3,200,000,000	
방송진흥기금 (SO 허가업체)			예금	19,750,000,000	
방송진흥기금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21 조2에 의한 출연금 1차)			예금	2,700,000,000	
방송진흥기금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21 조2에 의한 출연금 2차)			예금	1,800,000,000	
설립 자본금			예금	5,000,000	
합 계				112,392,684,283	감가상각누계액 (5,420,702,946)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안 건
보 고 일 자	2009. 9. 11. (제 3 회)	

안건명 :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개정(안)

제 안 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이 재 응
제 안 일	2009 . 9 . 11.

제 3 호 의안 :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개정(안)

1. 의결주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함.

2. 제안사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08.12.31)에 따른 우리원 청렴규정내 금품수수관련 제재시효 연장을 통한 청렴규정 강화

3. 제안내용

-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제13조(제재시효)를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기존 제재시효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추진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4. 조치 사항

- 이사회 의결후 시행

5.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08.12.31>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8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제 4 호	의 결 안 건
보 고 일 자	2009. 9. 11. (제 3 회)	

안건명 : 인사규정 개정(안)

제 안 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이재웅
제 안 일	2009 . 9 . 11.

제 4 호 의안 : 인사규정 개정(안)

1. 의결 주문

- 우리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명예퇴직 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대상자격의 정년 잔여기간 제한규정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인사규정 개정(안)
 - 명예퇴직 대상의 정년잔여기간 확대(수정) - 동 규정 제29조
 -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명예퇴직) ①원장은 정년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의 범위·대상·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명예퇴직) ①원장은 정년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의 범위·대상·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4. 조치 사항

- 이사회 의결후 시행

5. 관련근거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8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